

第122回(臨時會)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市民行政委員會會議錄

第1號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2002年 6月 25日(火) 11時25分

場 所 市民行政委員會室

議事日程

1. 서울特別市鐘路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된案件

1. 서울特別市鐘路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1面

(11時25分 開議)

○委員長代理 洪起瑞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지난 6월 지방선거에 혼신의 힘을 다하신 우리 모든 의원님들께 먼저 아낌없는 찬사를 드립니다. 물론 당락에 따라 의원님들의 명암이 엇갈리셨지만 최선을 다한 우리들은 당당하고 떳떳한 것이며 또한 당락에 관계없이 끝까지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모여주신 여러분들의 모습은 두고두고 후대에 관행이 되면서 아름답게 기억될 것입니다. 이제 당선이 되신 분들은 제4대 의회가 들어서면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겠지만 당선이 되지 않으셨거나 출마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들께서도 뒤에서나 혹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둠을 밝혀줄 수 있는 전 의원으로서의 역량을 힘껏 발휘하시면서 다음을 기약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열리는 본 위원회가 제3대 의회에서는 이제 마지막인 듯 싶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나는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내내 보람찬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李潤植 議事擔當主事の 보고가 있습니다.

○議事擔當主事 李潤植 議事擔當主事 李潤植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2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2년 6월 17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特別市鐘路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이 2002년 6월 19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幹事 洪起瑞 李潤植 議事擔當主事!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特別市鐘路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11時29分)

○委員長代理 洪起瑞 의사일정 제1항 서울特別市鐘路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을 상정합니다.

董連浩 行政管理局長!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行政管理局長 董連浩 안녕하십니까? 行政管理局長 董連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洪起瑞 幹

事님!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오고 계시는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서울特別市鐘路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98년도부터 추진해온 정부의 구조조정에 따른 기구와 정원 감축이 2001년 7월 31일자로 마무리되고 그에 따라 발생한 초과현원의 합리적 해소를 위한 법령인 「지방자치단체기구정원규정」이 2002년 6월 10일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행정자치부의 「정·현원관리지침」이 시달되어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정부의 구조조정에 따라 발생한 초과현원의 해소를 위해 신규채용 억제, 조기 및 명예퇴직 등 자연감소 유도, 시설관리공단 및 환경미화원으로서의 재취업 알선 등 적극적인 해소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강제 직권면직자가 없도록 직원 관리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7월 31일까지 해소하여야 할 초과현원이 49명에 달하고 있으며 초과현원에 대해서는 2002년 8월 1일자로 직권면직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구정원에 관한 법령 개정에 의해 총정원계가 적용됨에 따라 우리 구 현행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7월 31일까지 해소하여야 할 인원이 18명으로 대폭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금번 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조례 개정 표준안에 따라 우리 구의 2002년 8월 1일 기준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 인원에 대한 일치조정 기간을 2002년 8월 1일부터 2003년 2월 28일까지 6개월간 연장하는 사항으로서 초과현원 49명 중 일반직 5명은 시 인사교류의 방식으로 별도 해소하고 기능직 4명은 자연감소에 의거 축소함으로써 이들 9명을 제외한 초과현원 40명을 기간 중에 직종별 정원조정 방법 등을 통해 해소하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행정위원회 洪起瑞 幹事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개정조례(안)은 작은 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시책에 부응하면서 효율적 인력 관리를 위한 불가피한 상황임을 감안

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위원님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서울特別市鐘路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鐘路區廳長)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委員長代理 洪起瑞 董連浩 行政管理局長! 수고하셨습니다. 鄭聖洙 專門委員!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鄭聖洙 專門委員 鄭聖洙입니다.

2002년 6월 17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特別市鐘路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입니다. '98년부터 추진해온 공무원 정원 감축에 따른 구조조정이 마무리되어 2002년 7월 31일까지 우리 구 직종별·직급별 초과현원 40명을 감축하게 되어 있으나, 정부의 초과현원에 대한 합리적 해소방침에 따라 총정원 범위 내에서의 직종·직급별 불일치 정원을 한시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마련되었고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정·현원 관리지침」이 시달되어 우리 구에서도 이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초과현원을 해소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437호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 제3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제2항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40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 마무리 결과 우리 구 공무원 총정원은 2002년 7월 31일자로 파악한 현재 1,259명이며 현원은

1,285명으로서 26명의 초과현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나, 국가공무원법 제43조 및 공무원임용령 제42조에 의해 정원 외에 별도로 인정되는 휴직자 7명과 파견 6명, 공로연수 16명 등 총 29명이 별도정원으로 확보되거나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총정원 범위를 초과하는 현원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현행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정원조례 규정상으로는 총정원 범위 내에서 현원을 운영한다 하여도 직종·직급별로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총정원과 관계없이 초과현원을 2002년 7월 31일까지 면직시키도록 되어 있고, 우리 구의 경우는 직종·직급별로 정원과 일치하지 않는 인원이 40명으로서 직종별로는 기능직이 24명, 고용직이 16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잠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정원이 7급 10명, 8급 10명이면 총정원은 20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이 7급 8명, 8급 12명인 경우는 총정원은 20명으로 똑같습니다마는 7급은 2명이 부족하고 8급은 초과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것은 상관없으나 초과되는 8급 2명은 7월 31일자로 직권면직 대상자가 됩니다. 행자부의 지침은 이러한 총정원 범위 내에서 현원을 운영하면서도 직종·직급별 정원의 불일치로 인하여 2002년 7월 31일자로 면직되어야 하는 공무원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로서 2003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 상태를 일치시키기 위한 조정기간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 개정으로 부여하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시달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개정(안)은 정부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 시행과, 행자부의 「지방자치단체 정·현원 관리지침」 시달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공통사안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02년 8월 1일부터 2003년 2월 28일까지 직종·직급별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 상태를 해소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기관별로 공무원을 직종·직급별로 정원을 책정한 것은 업무 기능별로 업무량 등을 감안, 소요인력을 산정하여 정원을 정함으로써 업무

무별로 적정인력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이나 이러한 취지와 어긋나게 직권면직 대상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초과현원에 맞추어 정원을 조정하게 되면 업무기능별로 업무량에 비해 잉여인력 또는 부족 인력이 발생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직종과 직급이 맞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는 등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다행히 우리 구의 경우는 단순업무에 종사하는 기능직과 고용직에 한하여 불일치 인원이 발생하고 있어 부작용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은 되나 이들에 대해서도 향후 조직 및 인력진단 등을 철저히 실시하여 직종간 업무량과 비례하는 적정인력을 산정, 정원을 책정하는 등 인력 불균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 참고자료는 위원님들 심사하시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洪起瑞 鄭聖洙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중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예, 千相旭委員! 질의하십시오.

○千相旭委員 千相旭委員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에 의하면 직급별 정원에서 8급 2명이 초과되어서 이번 정원조례 규정을 일부 개정하더라도 불가피하게 8급 2명이 직권면직 대상자가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주십시오.

○行政管理局長 董連浩 직급별 정·현원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10일자로 행자부령으로 인한 규정이 바뀌어서 총정원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7급이 정원 10명이 있는데 현재 현원이 8명이 있으면 그 모자라는 부분을 정원이 10명이고 현원이 12명인 8급에서 인원이 남는다 하더라도 직급별 정·현원을 적용했을 경우에는 인원이 나머지 8급의 경우는 2명을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6월 10일자로 규정이 바뀌에 따라서 총정원제를 도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7급과 8급을 합한 정원 20명에 대해서 현실적으로는 현원이 2명 모자라는 7급과 현원이 2명이 남는 8급을 합하면 현원이 20명이 됩니다. 그래서 총정원제를 도입했을 경우에는 별도의 구조조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千相旭委員 그러니까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총정원제가 도입되면 직급별 관계없이 2명을 별도로 직권면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行政管理局長 董連浩 그렇습니다.

○千相旭委員 그런데 어떻게 해서 40명에 달하는 초과인원이 발생했습니까? 그동안 행정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行政管理局長 董連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훨씬 많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과거에 경찰관서에서 근무하던 방범원들이 저희 구로 상당히 많은 수가 이관되어 왔습니다. 지금은 지도원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인원이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고 또 하나는 검침원이라고 있습니다. 검침원들이 상당히 많은 수가 우리 구로 또다시 이관이 되어 왔습니다. 그동안에 자연감소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원인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지금 이런 40명의 초과현원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일반직의 경우는 정원에 비해서 우리 현원이 상당히 부족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千相旭委員 아무튼 이번 조례 개정으로 종로구청에서는 고용직이든 일반직이든 더이상 구조조정은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다 구제가 되죠?

○行政管理局長 董連浩 예, 7월말까지로 해서 구제가 가능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강제 퇴직은 없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千相旭委員 그런데 이러한 조례 개정을 이 시점에서 꼭 해야 될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行政管理局長 董連浩 말씀드렸지만 7월말까지 이 구조조정의 작업이 마무리되어야 되고 만일에 이 조례 개정을 6월말까지 개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달 이내에 구조조정 대상자를 사전에 통보하고 행자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6월말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7월말까지 구조조정을 불가피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임기가 막바지에 달한 현시점임을 알면서도 불가피하게 저희가 조례 개정을 의회예다 의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점은 해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千相旭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委員長代理 洪起瑞 예, 千相旭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金正大委員님! 질의하십시오.

○金正大委員 金正大委員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조금 애기가 틀린 것 같아서, 금번 개정조례의 주요 내용에 보면 2002년 8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 인원에 대한 조정기간을 2002년 8월 1일부터 2003년 2월 28일까지 6개월간 연장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行政管理局長 董連浩 예.

○金正大委員 그러면 2003년 2월 28일 그 이후에는 다 조치되니까? 조치될 수 있는 계획을 말씀을 해주세요.

○行政管理局長 董連浩 金正大委員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일에 조례가 개정이 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7월말로 그 40명에 대한 인원을 별도로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마는 이것이 6개월간 연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40명에 대한 구제방안은 우선에 일반직도 고용직의 정원하고 일부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정원을 조정하고

○金正大委員 정원 조정은 자치구에서 가능합니까?

○行政管理局長 董連浩 가능합니다. 총정원 범위 내에서 일반직의 정원을 줄이고 고용직이나 기능직의 정원을 늘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金正大委員** 그래서 고용직의 인원을 늘리는 것은 가능하다

○**行政管理局長 董連浩** 그래서 그 방법도 우선 모색하고 또 하나는 이것은 자율적인 방법에 의한 것입니다마는 명예퇴직이나 또 공로연수 이런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를 해서 절대로 강제퇴직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할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金正大委員** 우리 구의 행정기구로 봐서는 일반직이 많고 고용직이 적으면 좋죠?

○**行政管理局長 董連浩** 반드시 그렇다고는 생각을 안합니다.

○**金正大委員** 그러면 이 말도 아니고 저 말도 아니고 무슨 말을 들어야 됩니까?

○**行政管理局長 董連浩** 지금 현재 일반직이 반드시 많아야 하고 고용직이나 기능직이 적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까 검침원하고 방법원 이분들이 많아서 수적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저희 일반직 공무원 수가 줄어든 것으로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틀립니다. 총정원제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그 문제는 해소되었습니다.

○**金正大委員** 검침원과 방법원이 수적으로 자리를 많이 차지해서

○**行政管理局長 董連浩** 아닙니다. 조금 전에 千相旭委員님이 왜 40명이 현원이 초과되었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기를 일반직의 경우는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金正大委員** 좋아요. 그러면 검침원과 방법원의 숫자를 늘리겠다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行政管理局長 董連浩** 늘리겠다는 것이 아니고

○**金正大委員** 총정원으로 늘리겠다고 했잖아요?

○**行政管理局長 董連浩** 총정원을 늘리겠다는 것이 아니고 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일반직의 정원을 줄이는 대신에 고용직이나 기능직의 정원을 늘림으로 해서

○**金正大委員** 그러니까 결국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일반직이라는 것은 행정직을 말하는 거죠?

○**行政管理局長 董連浩** 행정직도 있고 건축직도 있고 토목직도 있고 직종이 많습니다.

○**金正大委員** 일반직이 건축직, 토목직도 다 일반직이라고 합니까?

○**行政管理局長 董連浩** 그렇습니다.

○**金正大委員** 그런데 몇 개월 전에 방법원에 대해서 근무연령 연장을 해줬죠? 구청에서 그 안을 제안을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연장을 해줬는데 이런 것도 감안을 안하고 연장을 하는 안을 제안했었습니까? 우리 의회에다 그런 점을 고려를, 방법원, 지도원들의 정년을 연장하는 문제는 전혀 도외시되고 고용직 숫자가 계속 늘어날 것이 아닙니까?

○**行政管理局長 董連浩**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전혀 도외시하고 정년연장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지도원들의 정년연장도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사항이어서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正大委員** 됐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조례개정 표준안 그것을 여기에서 볼 수가 없죠?

○**行政管理局長 董連浩** 표준안에 있는 그대로 저희가 부칙에다 적용시켜 놨습니다.

○**金正大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洪起瑞**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예, 鄭泰淳委員! 질의하십시오.

○**鄭泰淳委員** 鄭泰淳委員입니다. 그동안 지난 7년동안 이렇게 의원생활을 하면서 집행부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했는데 열심히 개선을 요구하고 했는데 미흡한 점도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직원들이 따라주시고 또 이렇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동안 잘한 것보다는 우리 직원들한테 접한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빌어서 직원들한테 그동안 더 잘할 걸 하는 의원의 착잡한 마음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단상에 설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무국장님이나 직원분들께서는 앞으로 새로 오시는 의원님들이나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그것이

바로 공무원 본연의 자세도 그렇고 주민을 위해서도 그렇고 모두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질문을 드려야 한다가보다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도와주셔서 고맙고 더욱더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우리 공무원들은 종로구민을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洪起瑞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면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特別市鐘路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전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본회의에서 안전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2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時52分 散會)

○出席委員 8人

洪起瑞 鄭泰淳 千相旭 洪承台
朴鍾植 李東奎 金正大 宣相善

○出席專門委員

鄭聖洙

○出席關係公務員

行政管理局長 董連浩

總務課長 金周會